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1999. 06.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설립요건) 본 대학교에 부설 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발전과 지역개발과 매우 밀접한 분야인 경우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연구대상 분야가 연구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대학발전, 대외 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연구소 참여인력이 최소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7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연구소 참여인력 전체의 최근 3년간의 외부연구비 총 수탁 실적이 자연계 연구소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인문사회계 연구소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5. 연구소의 사업계획에는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6.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설립절차)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부설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를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결성한다.
- ② 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 연구소설립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취업처 Co-op연구실에 제출한다.
 1. 설치사유 및 배경 : 설립목적, 설립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소 조직표(기구) : 연구소 내부조직
 3. 연구소 규정 : 부설연구소 규정준칙에 의하여 작성
 4. 연구소 사업계획 : 연구소 내부조직별로 세분하여 작성
 5. 연구소 운영예산 : 연간 총수입 및 지출
 6. 기타 참고자료 : 연구원 인적사항, 최근 3년간 연구비 수혜 실적 등
- ③ 산학취업처 Co-op연구실에서는 설립계획서를 연구지원·윤리위원회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④ 교무위원회는 설립계획서를 심의하여 연구소의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기획조정처에서는 연구소의 신설이 결의된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직제 규정을 개정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 3. 31)

제4조 (운영지침) ① 연구소는 자립원칙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설립 후 1년까지는 교내 연구비에서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소속연구원들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과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기타 구성에 세부 사항은 연구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폐지) 연구소가 제2조의 설립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